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4. 8. 30

나. 회부일자 : '94. 8. 30

3. 제안이유

-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<직업안정법>으로 개정되고 동법중 직업안정 <국내 직업소개 사업>업무중 일부가 도지사 권한으로 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빈번한 접촉과 현지성이 요구되는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등 사무를 시장·군수 및 증평출장소장에게 권한 위임하여, 행정능률 향상 및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국내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(8종)
 - 유료 직업소개 사업의 허가
 - 직업소개 업소의 지도 및 감독
 - 유료 직업소개 사업의 폐지 신고의 수리

- 유료 직업소개 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
- 직업소개소 폐쇄등 조치
-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- 직업소개사업의 보고 및 검사
- 유료 직업소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직업안정법으로 개정되고 국내 직업소개 사업 업무중 일부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됨에 따라 행정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, 군수 및 증평출장소장에게 위임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써,

그 주요내용을 보면,

국내 직업소개 사업에 대한 유료 직업소개 사업의 허가, 직업소개 업소의 지도 및 감독,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폐지신고의 수리,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, 직업소개소 폐쇄등 조치,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, 직업소개사업의 보고 및 검사, 유료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으로 본 업무를 권한 위임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첨부

-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(안)
- 조문대비표